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 11. 19.] [고용노동부령 제336호, 2021. 11. 19., 일부개정]

부칙 <제272호, 2019. 12. 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9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제출에 관한 특례)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
1. 종전의 법(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을 말한다. 이하 제2호에서 같다)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인 경우

- 가. 제조·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·수입량이 **1,000톤 이상**: **2022년 1월 16일**
- 나. 제조·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·수입량이 **100톤 이상 1,000톤 미만**: **2023년 1월 16일**
- 다. 제조·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·수입량이 **10톤 이상 100톤 미만**: **2024년 1월 16일**
- 라. 제조·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·수입량이 **1톤 이상 10톤 미만**: **2025년 1월 16일**
- 마. 제조·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·수입량이 **1톤 미만**: **2026년 1월 16일**

2.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료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인 경우: 2026년 1월 16일. 다만,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료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(제16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1. 11. 19.]

제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)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
제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)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
제18조(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.

제2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08호, 2021. 1. 1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8호, 2021. 7. 13.> 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6호, 2021. 11. 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·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·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